

#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: 2007. 1. 12(사천시장)

나. 회 부 : 2007. 1. 12(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12호)

다. 상 정 : 2007. 1. 23(제111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결)

## 2. 제안설명요지(하수도사업소장 : 천병기)

가. 제안사유

○ 「지방세법」 및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으로 개정된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) 상위법령 기준 적용

○ 하수요금 체납금 가산금 조정 : 100분의 5 ⇒ 100분의 3(안 제16조)

○ 이의 신청기간 조정 : 60일 ⇒ 90일(안 제18조)

다. 관계법령 : 「지방세법」, 「지방자치법」

## 3. 검토의견(전문위원 : 정광수)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

○ 개정되는 주요내용은

- 상수도 요금 체납금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(안 제16조), 이의 신청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조정하려는 것임

○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된 법령 등을 검토한 바 시행하여도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됨

4.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없음